商事判例研究

第Ⅳ卷

總則·商行爲·會社·保險·海商

(1997~2000)

編輯代表 崔 基 元

博 英 社

會計帳簿 및 株主名簿閱覽請求의 정당한 目的

金 容 昊*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事實의 槪要]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의 주주 4인(주주 중의 1인은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은 A회사에게 會計帳簿 및 書類, 株主名簿(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포함)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A회사로부터 거절당하자, A회사를 상대로 會計帳簿, 株主名簿 등의 閱覽謄寫假處分申請을 제기하였다.

[訴訟의 經過]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위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96카합4181호 결정으로 A회사로 하여금 위 주주들이 회계장부 및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포함)를 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A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한 強制執行을 停止시켜 달라는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97카기131 결정으로 A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이의사건의 1심판결선고시까지 위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였다. 그러자 위 주주 4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대법원에 特別抗告를 제기하였다.

[決定要旨]

1. 대법원은, 假處分決定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假處分判決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의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執行의 停止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權利保全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공 1997, 167.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終局的 滿足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를 類推適用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1]라는 점을 밝힌 다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6카합4181호 회계장부및서류등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은 A회사에게 위 주주들이 會計帳簿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본안의 소송물인 閱覽·謄寫請求權이 이행된 것과 같은 終局的인 滿足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A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음이 그 내용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는 점 및 商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의 株主名簿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請求의 目的이 正當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나서, 기록에 의할 경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A회사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주장한 사실이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또한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도 소명된 것으로 보아 담보 없이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제1심판결선고시까지 위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한 집행의 정지를 명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評　　釋]

Ⅰ. 問題의 所在

위 결정상의 법률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商法상 주주명부등열람·등사청구 및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를 本案訴訟이 아닌 假處分의 형태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가처분의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며,[2] 위 결정은 다수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가처분결정에 기한 強制執行에 대하여 그 執行停止를 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도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등 학설대립이 있

1) 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1996. 4. 24.자, 96그5 결정 등 참조.
2) 이에 관한 상세는 和座一淸, 新版 注釋會社法(9), 有斐閣, 214~217면 참조.

으나,[3]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절충설의 입장을 취한 종전의 입장[4]을 재차 밝힌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 쟁점과 관련하여 가처분에 기한 會計帳簿 또는 株主名簿 등의 열람·등사청구가 권리관계의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가처분은 滿足的 假處分의 일종으로서[5] 권리관계의 종국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위 결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역시 하지 않기로 한다.

셋째, 주주의 會計帳簿等閱覽·謄寫請求 또는 株主名簿等閱覽·謄寫請求가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은 A회사가 주주의 회계장부,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 결정은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본 고에서는 주주의 會計帳簿 또는 株主名簿 등의 열람·등사청구가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위 결정의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Ⅱ. 商法상 正當한 目的에 관한 규정내용

1. 會計帳簿閱覽權

商法상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分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株主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제1항) 會社는 株主의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2항). 이를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권(이하 會計帳簿閱覽權이라 한다)이라 한다. 會計帳簿閱覽權은 주주가 경영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나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共益權이며, 會計帳簿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부당이용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少數株主權으로 인정되고 있다.[6]

---

3) 이에 대한 상세는 徐泰榮, 保全處分執行의 停止와 取消, 裁判資料 第46輯 "保全訴訟에 관한 諸問題(下)," 135~155면 참조.

4) 이에 관한 상세는 고영한, 假處分判決에 대한 上訴提起와 民事訴訟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執行停止의 許否,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3호(1995), 298~314면 참조.

5) 和座一淸, 前揭書, 215면.

6)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에서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소수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증거 191조의 13 참조).

商法의 규정상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立證責任이 회사에 있기는 하나, 주주가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함에 있어 正當한 目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법문의 내용상 분명해 보인다. 會計帳簿에는 주주가 代表訴訟에서의 이사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 경영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과 동시에, 예컨대 회사의 영업비밀 등 경쟁적인 회사에 노출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회사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무관한 것으로 권리남용행위이며, 이러한 권리남용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청구권행사에 正當한 目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 및 어떠한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2. 株主名簿閱覽權

商法은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식총회의 의사록, 株主名簿, 社債原簿와 理事會의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396조 2항, 1항). 이를 주주명부등열람·등사청구권(이하 株主名簿閱覽權이라 한다)이라 한다. 주주명부열람권도 회계장부열람권과 같이 회사의 운영에 대한 감독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를 共益權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7] 그 부당이용으로 인한 회사피해의 정도가 회계장부의 그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單獨株主權으로 인정되고 있다.

商法 제396조 제2항은 주주명부열람권의 시간상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의 여부, 正當한 目的의 개념,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인지 등은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3. 商法상 閱覽權制度의 沿革

우리 商法상 회계장부열람권이나 주주명부열람권은 1962년 1월 20일 제정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商法典(법률 제1000호)에 규정되었던 것

7) 崔基元, 第9大訂增補版 新會社法論, 博英社, 1999, 369면; 禹洪九, 株主名簿閱覽請求權에 관한 一考察, 眩谷金斗煥教授華甲紀念論文 "國際航空宇宙法 및 商事法의 諸問題," 629면.

으로,[8] 미국법상의 帳簿記錄閱覽權(right of inspection of all books and records)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일본 商法은 1950년의 개정을 통하여 미국 주식회사법상의 장부기록열람권 제도를 계수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에 관한 제293조의 7의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9]

따라서 미국의 주식회사법상 帳簿記錄閱覽權의 행사요건인 정당한 목적(proper purpose)에 관한 논의 및 일본법상 正當한 目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商法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미국의 帳簿記錄閱覽權과 正當한 目的

1. 普通法과 制定法

미국의 普通法(common law)상 주주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正當한 目的(Proper Purpose)을 위하여 회사의 장부와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열람권의 대상인 會社의 帳簿와 記錄이란 회계장부,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기타의 기록을 말한다.[10] 미국의 보통법상 일반적으로 正當한 目的에 대한 立證責任은 주주가 부담하고 있으나,[11] 최근의 판례들은 회사가 목적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12]

미국 各 州의 制定法 대부분은 주주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열람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주에게 正當한 目的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정당한 목적에 대한 立證責任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목적의 부당성에 대한 立證責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3] 각 주의 제정법에 따라서는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최소한의 주식수 또는 주식보유기간 등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열람의 대상을 제한하기도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정법상의 열람권이 普通法상의 열람권보다 제한적이다.[14] 다만 각주의 制定法상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普通法상의 열람권과 制定法상의 열람권은 병존적이기 때문에 주주는 보통법상의 열람권에 기하여 장부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

8) 大韓民國法律沿革集 5, 민사법(1), 韓國法制硏究院.
9) 和座一淸, 前揭書, 201면.
10) Henn & Alexander, Laws of Corporations, 3rd ed., 1983, p. 537.
11) Clark, Corporate law, 6th pr., 1986, p. 97; Carry & Eisenberg,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7th ed., 1995, p. 218.
12) Henn & Alexander, *op. cit.*, p. 537.
13) 林在淵, 美國會社法, 博英社, 1995, 140면.
14) Carry & Eisenberg, *op. cit.*, p. 218.

으로 해석되고 있다.[15]

2. 模範事業會社法

미국에서는 州會社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模範事業會社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으로서 주의회가 그대로 또는 일부의 수정을 거쳐 법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16] 1984년에 개정된 모범사업회사법 16.02에 의하면 주주가 부당이용시 회사에 손해발생의 우려가 큰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正當한 目的이 있어야 하지만, 주주가 회사의 기본정관, 이사회의사록, 3년간의 주주총회 의사록, 연차 사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열람함에 있어서는 正當한 目的은 그 요건이 아니다.[17]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普通法보다 열람요건이 엄격해졌고 기타의 서류의 경우에는 普通法보다 열람요건이 완화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18] 그리고 주주는 모범사업회사법 7.20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개최가 통지된 2영업일 이후부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때 열람의 경우에는 正當한 目的이 필요 없지만 등사의 경우에는 위 16.2의 株主名簿閱覽權처럼 정당한 목적이 필요하다.[19]

3. 正當한 目的의 개념과 유형

보통법상 정당한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주주로서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advancing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protecting his own interest as a stockholder)으로 설명되고 있고,[20] 미국의 제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 Delaware주 일반회사법은 正當한 目的의 정의를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관계되는 목적(purpose reasonably related to such person's interest as a stockholder)'으로 규정하고 있다.[21]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정상태, 배당의 적정성, 주식의 가치, 부정경영의 존재, 합법적

15) *Ibid.*, p. 219; 和座一清, 前揭書, 203면; 林在淵, 前揭書, 130면.
16) 崔基元, 前揭書, 37면.
17) 美國模範會社法典, 法務資料 第156輯, 法務部, 366~371면.
18) Clark, *op. cit.*, pp. 97~98.
19) 前揭法典, 134~137면.
20) Carry & Eisenberg, *op. cit.*, p. 218.
21) *Ibid.*, p. 214.

인 소송을 위한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會計帳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경우나 회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株主와 意思連絡을 하기 위하여 株主名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것은 正當한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22] 또한 회사의 支配權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경영진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주주가 委任狀勸誘를 하기 위하여 株主名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다.[23]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로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빼내려는 경우, 개인사업을 위하여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우, 회사의 약점을 캐내어 금품강요를 위한 시위소송(Strike Suit)을 제기하려는 경우, 개인의 社會的 또는 政治的 目的을 위한 경우 등이 있다.[24] 그리고 주주의 지위와는 관계 없이 주주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행해지는 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정보수집차원 또는 DM(Direct Mail)회사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25]

Ⅳ. 일본에서의 正當한 目的에 관한 논의

1. 會計帳簿閱覽權

일본 商法은 1950년의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주식회사법 규정을 계수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에 관한 제293조의 7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商法 제293조의 7 제2항은 회사가 회계장부등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첫째, 株主가 株主의 權利確保 또는 行使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청구를 하거나 회사의 사무운영 또는 株主의 공동이익을 害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동조 1호), 둘째, 株主가 會社와 경업을 하는 자이거나 會社와 경업을 하는 會社의 社員, 株主, 理事이거나 會社와 경업을 하는 자를 위하여 會社의 株式을 소유하는 자인 경우(동조 2호), 셋째, 株主가 書類의 閱覽·謄寫로 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他에 通報할 목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목전 2年內에 會社 또는 다른 會社書類의 閱覽·謄寫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고 他에 通報한 자일 경우(동조 3호), 넷째, 株主가 不適當한 시기에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동조 4호)를 열거하고 있다. 위의 사유는 制限的 列擧로

22) Henn & Alexander, *op. cit.*, p. 537; Carry & Eisenberg, *op. cit.*, p. 219; 林在淵, 前揭書, 138~139면.

23) 林在淵, 前揭書, 139면; Carry & Eisenberg, *op. cit.*, p. 219.

24) Henn & Alexander, *op. cit.*, p. 538.

25) 林在淵, 前揭書, 138면.

서 그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定款으로 그 이외의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26] 주주는 會計帳簿閱覽權을 행사함에 있어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열람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27]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경업은 현재 競業關係에 있는 경우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競業을 할 蓋然性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28]

2. 株主名簿閱覽權

주주명부열람권에 관하여 일본 商法은 우리 商法과 같이 회사가 株主名簿閱覽權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학설 및 판례는 주주명부열람권도 권리인 이상 그 행사에 있어서 信義誠實이 요구되고 그 濫用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에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다만 회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立證責任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29] 일본의 판례는 종래에 株主가 會社의 營業을 妨害할 목적 또는 회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株主名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고,[30] 근래에는 회사로부터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나 또는 정보업자 등에게 주주의 정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명단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 없는 個人的營利活動에 이용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열람권을 행사하는 경우,[31]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공개주식의 政治人에게의 양도에 관한 情報公開의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청구를 하는 경우,[32] 회사가 주주가 발행하는 업계신문, 잡지의 구독을 중단한 데 대한 報復의 目的 또는 그 구독을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株主名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경우[33]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 경영진을 비판하는 문서를 주주들에게 송부하기 위

26) 和座一清, 前揭書, 218면.
27) 最高裁 1990年 11月 8日 判決, 株主の會計帳簿閱覽謄寫請求權と閱覽對象の特定, 民商法雜誌 第104卷 第4號(1991), 527면.
28) 東京地裁 1994年 3月 4日 決定, 近藤光男, 會計帳簿閱覽謄寫請求と競業會社, 商事法務 1356號(1994), 4면.
29) 前田重行, 株主名簿の閱覽謄寫に關する法的論点, 商事法務 1120號(1987), 4면.
30) 같은 論文, 5면.
31) 東京地裁 1987年 7月 14日 判決, 倉澤康一郎, 株主名簿の閱覽請求と正當目的, ジュリスト 901號(1988), 42면.
32) 東京高裁 1989年 7月 19日 決定, 判例時報 1321號(1989), 156면.
33) 最高裁 1990年 4月 7日 判決, 判例時報 1380號(1991), 136~139면.

하여 또는 발언권의 강화를 위하여 株式買受勸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34]

Ⅴ. 우리 商法의 正當한 目的에 관한 해석론

1. 株主名簿閱覽權의 正當한 目的의 필요성과 근거

이상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商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법의 경우 會計帳簿 및 株主名簿는 모두 회사의 장부 및 서류의 일종으로서 주주에게 正當한 目的이 있는 경우 그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법을 계수한 일본 商法의 경우 會計帳簿閱覽權을 少數株主權으로 인정하되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株主名簿閱覽權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으로 그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商法은 회계장부열람권을 少數株主權으로 인정하면서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정당한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商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株主名簿閱覽權의 경우 주주에게 正當한 目的이 있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주주명부열람권은 주주가 가지는 共益權의 일종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예컨대 株主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有償으로 讓渡하는 등 개인의 영리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종의 권리남용행위로서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가 正當한 目的이 없다는 점이 될 것이다. 즉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요건으로 정부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5]

그러면 正當한 目的을 요구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생각건대 우리의 모법인 미국법상 會計帳簿閱覽權 및 株主名簿閱覽權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우리 商法이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명부열람권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목적이 필요한 이유는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會計帳簿閱覽權에 관한 商法 제466조 제2항을 주주명부열람권의 경우에도 유추적

34) 山形地裁 1987年 2月 3日 判決, 倉澤康一郎, 前揭論文, 42면.
35) 禹洪九, 前揭論文, 633면.

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회사는 주주의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2. 正當한 目的의 개념

이로써 우리 商法상 會計帳簿閱覽權 또는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요건으로 正當한 目的이 필요하다는 점은 밝혀졌으나,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商法상 명문의 정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해석론도 찾아보기 어렵다. 正當한 目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정의를 한다고 하여도 동어반복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 Delaware주 회사법은 정당한 목적의 정의를 '주주로서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관계되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商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도의 개념정의가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會計帳簿閱覽權이나 株主名簿閱覽權에 관한 분쟁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 및 商法상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立證責任이 회사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의의 초점은 어느 경우에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집중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라 할 것이다.[36]

3.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

會計帳簿閱覽權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회사가 正當한 目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법문상 불분명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해석론으로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때, 회사 및 다수주주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때, 청구자가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은 正當한 目的이 없다고 보고 있다.[37] 주주가 주주의 자격을 떠나 회사와의 거래 또는 근로계약에 기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38] 일본 商法상 會計帳簿閱覽權의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유 및 미국법상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로 논의되

36) 같은 論文, 634면.
37) 崔基元, 前揭書, 841면.
38) 鄭東潤, 三訂增補版 會社法, 法文社, 1994, 609면.

는 사유들 대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商法상으로도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商法 제396조 제 2 항의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요건으로 正當한 目的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商法 제466조 제 2 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會計帳簿閱覽權상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로서 논의되는 사유 즉 주주의 권리행사와 전혀 무관한 경우, 회사와 다수주주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경우, 청구자가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는 株主名簿閱覽權의 正當한 目的이 없는 경우의 해석론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39] 미국 및 일본에서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논의되는 사유들 대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商法상으로도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의 株主名簿閱覽權과 관련하여 장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는 회사에 지배권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가 委任狀勸誘의 상대방 또는 株式賣渡者를 찾기 위하여 株主名簿에 대한 閱覽權을 행사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40] 미국 또는 일본의 경우 지배권분쟁이 발생한 경우 委任狀勸誘 또는 주식매도자를 찾기 위한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商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株主名簿閱覽權을 행사하는 것은 正當한 目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4. 正當한 目的에 대한 立證責任

商法상 會計帳簿閱覽權의 경우 주주가 정당한 목적에 대한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법문상 분명하다.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株主名簿閱覽權의 경우도 商法 제466조 제 2 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회사가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9) 禹洪九, 前揭論文, 630면.

40) 위 대법원 결정에서 문제된 사건도 지방 소주 3사의 A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 즉 대주주간의 경영권분쟁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던 것이나, 주주명부의 열람청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위 대법원결정, 원심결정을 살펴보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41) 禹洪九, 前揭論文, 644면.

Ⅵ. 대법원결정에 대한 평가

위 대법원결정은 특히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商法의 해석론상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실무적으로도 會計帳簿閱覽權 또는 株主名簿閱覽權의 부당행사에 첫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株主名簿閱覽權의 正當한 目的이 없다는 점에 대한 立證責任을 회사에 부담시킨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째, 株主名簿閱覽權의 행사에 正當한 目的을 요구하는 근거 및 회사가 正當한 目的이 없음을 입증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우리 商法의 해석상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商法 제466조 제2항의 규정을 類推適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는 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위 결정에서 商法 제466조 제2항의 용어법과 비슷하게 회사가 정당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주주명부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응 商法 제46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위 결정만으로 正當한 目的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위 결정, 원심결정, 가처분결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A회사가 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상장회사라는 점 및 주주 중의 1인이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라는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A회사 및 주주 중의 1인이 주류제조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競業의 蓋然性때문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위 결정에서 문제된 사건은 지방 소주 3사의 A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도 즉 대주주간의 經營權紛爭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던 사건으로서, 장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권분쟁시의 會計帳簿 또는 株主名簿 열람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正當한 目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